



제 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 의무화 등〉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47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 의무화(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등)	3
2.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 등 설치·운영 근거 신설 (안 제28조제4항 신설)	11
3. 농식품부장관의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 법적 근거 신설(안 제31조의3 신설) ...	2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4. 11.

다. 회 부 일 : 2025.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분야 개발협력을 위해 국제농업 및 산림 분야 개발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 및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 시 더 큰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선 농업분야 ODA를 통해 전문인력양성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기에 해외농업과의 ODA연계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 종합 기본계획과 연관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8조제4항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투명한 시행과 관련 정책에 대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음(안 제31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 의무화(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6.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신 설></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u>제4항</u>----- ----- ----- -----.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수립 시 국가 전체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략인 ‘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 수립 시 국가 전체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략인 ‘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에 이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함.

다. 검토의견

“국제개발협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① 무상 또는 ② 유상의 개발협력 등을 의미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

① “무상협력”이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임(「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4호).

② “유상협력”이란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뜻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①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②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주관하고 있음.

상기 주관기관은 동법 제11조제3항1)에 따라, 5년마다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 소속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주관기관은 5년마다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 “위원회”라 한다)²⁾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심사·의결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목적)**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실적·성과를 평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06.1월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10.1.25 제정)』에 따라 설치·운영

□ **(설치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무총리 소속)

* 통상 연 4회 정도 개최 (①당해년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심의·확정(2월경) ②차년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안) 요구안 심의(7월경), ③평가심의 및 주요 전략 수립 등 주요 사항 있을 경우 개최)

** '25.6월 현재 제53차까지 개최됨 ('25년는 2월, 5월 2차례 개최)

□ **(구성)** 국무총리(위원장), 당연직(16명), 위촉직(12명)

구 분	구 성
위원장(1)	국무총리
당연직(16)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위촉직(1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

* 산하에 **실무위원회**(위원장: 국조실 국무1차장) 및 **평가전문위원회**(위원장: 국조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설치·운영

**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前審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촉진·상정 안건을 사전 협의·조정하고, 기타 ODA 관련 주요사항 논의

□ **주요 기능**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의 총괄 심의·조정**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5년 단위) 및 연간 종합시행계획, 국가협력전략(CPS),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 유·무상 및 양자·다자 원조사업 간 연계·협력, 인력양성 등 주요 정책 심의·조정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 연간 통합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결과 심의 및 환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제출(2025. 6. 17)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한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해외농업산림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25년 우리나라 ODA 사업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 및 규모는 다음 표와 같음.

【 농림수산 분야 ‘25년 ODA 현황 】

- (총규모) ‘25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6조 5,010억원으로, 총 41개 기관 1,928개 사업 추진
- (총괄기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주관기관) 무상원조 : 외교부, 유상원조 : 기획재정부
- (시행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식량원조(1,901억) 사업은 인도적 지원 분야, 그 외 사업은 농림수산분야로 집계

<분야별 ODA>

구 분	구분	인도적 지원	교통	공공행정	보건	에너지	교육	농림수산	수자원 및 위생	환경보호	산업	통신	기타
규모 (억원)	유상	-	6,985	2,012	1,777	2,694	328	651	2,355	574	55	869	3,200
	무상	9,019	750	2,154	2,180	1,165	3,455	2,745	628	998	961	134	8,763
	총계	9,019	7,735	4,166	3,957	3,859	3,783	3,396	2,983	1,572	1,016	1,003	11,963
비중 (%)	유상	-	32.5	9.4	8.3	12.5	1.5	3.0	11.0	2.7	0.3	4.0	14.9
	무상	27.4	2.3	6.5	6.6	3.5	10.5	8.3	1.9	3.0	2.9	0.4	26.6
	총계	16.6	14.2	7.7	7.3	7.1	6.9	6.2	5.5	2.9	1.9	1.8	22.0

출처: ‘25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제출(2025. 6. 17)

이 표와 같이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국가 전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부이므로,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을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계획 수립과 더불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6조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해외농업산림법」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에서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³⁾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국제산림

3)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력사업 종합계획도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 등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28조제4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각각 해외농업자원개발 및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현행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학과·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각각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28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학과·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u> ⑤ -----제4항----- ----- ----- -----.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인력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기본법인 「고등교육법」 제5조는 교육부장관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동법 제19조는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 등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개별법에서 학교조직의 설치를 규정함은 법률 상충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설치’는 삭제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학과 등

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또한, 「해외농업산림법」 제28조 제1항에서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석전문위원 수정 의견에 동의함.

2) 산림청

「해외농업산림법」 제28조 제1항에서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석전문위원 수정 의견에 동의함.

이외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 문구 추가 및 ‘설치’ 문구 삭제 등에 대한 농식품부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3) 교육부

교육부 장관은 「대학 등(학교)’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을 보유(고등교육법 제5조)하고 동법 제7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방향,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또한, 학교 조직은 동법 제19조에 따라 학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므로 법률 상충 우려가 있어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4) 외교부

동법 제2장 제5조의3에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동 계획에 이미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종합계획에 한정된 국제농업협력사업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사항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지원을 규정한 제28조에 규정하는 것은 동 법 자체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의 법 체제와 맞지 않음.

따라서, 해당 개정안 취지 및 동 법의 구성상 제4장에서는 해외농업·산림 자원 개발 사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및 비상 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외농업 자원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 해외농업 자원개발 사업 현황 】

□ '25년 예산(안) : 8,835백만원(농지관리기금)

세부사업	예산(백만원)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24	'25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용자)	6,700	6,000	·소요사업비의 50~70%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2%(국물 1.5%)	·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지원대상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3,000	2,835	·보조 50~100%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인력양성 등)	·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지원대상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용자사업) 기업의 해외진출자금 용자 지원(6,000백만원)

- (지원내용)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부대시설, 건조·저장·가공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영농비 등
- 용자지원 절차

공 고	⇒	용자신청 접수	⇒	용자대상자 선정	⇒	약정체결/지급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용자심의회		용자대상자,공사

□ (보조사업) 민간의 해외투자환경조사, 전문교육, 영농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정보제공 및 워크숍 등 교류 지원(2,835백만원)

- 보조사업 추진절차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보조금 교부 및 개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결정 및 개산금 지급 승인	⇒	보조금 지급
시행계획 수립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승인 :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 자원개발협회 ⇒ 농식품부		농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 자원개발협회		농지관리기금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 자원개발협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제출(2025. 6. 17)

또한, 산림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해외산림 자원개발 관련 컨설팅, 투자환경 정보제공 등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목재수급 안정화 및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산림 자원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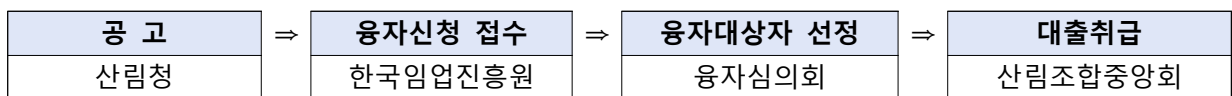
【 해외산림 자원개발 사업 현황 】

□ '25년 예산(안) : 5,310백만원

세부사업	예산(백만원)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24	'25		
산림사업종합자금 (해외산림자원 개발용자)	4,700	4,700	·소요사업비의 70 ~ 100% ·2~25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5%	·시행주체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원대상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등
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자원개발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610	610	·해외산림자원개발(민간위탁) - 사전환경조사, 컨설팅, 역량강화, 정책지원 등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민간위탁) - 청년인재 16명 선발, 파견	·해외산림자원개발 - 시행주체 : 한국임업진흥원 - 지원대상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등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 시행주체 : 한국임업진흥원 - 지원대상 : 청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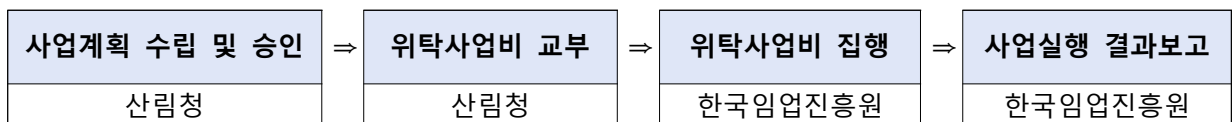
□ (용자사업)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자금 용자 지원(4,700백만원)

- (지원내용) 해외조림, 육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에 필요한 비용
- 용자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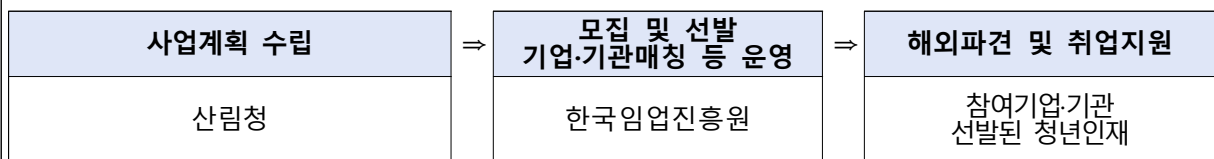
□ (민간위탁)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610백만원)

- (해외산림자원개발) 조사·컨설팅, 투자·환경 정보제공, 해외산림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 등(364백만원)
- 해외산림자원개발 민간위탁사업 추진절차



-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해외 직무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246백만원)

-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민간위탁사업 추진절차



※자료: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해외자원담당관 제출(2025. 6. 17)

한편, 현행법 제28조제1항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각각 수립·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학과·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현재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학과·전공”을 보유한 대학은 없고, “국제농업 협력사업 관련 농업특화 대학원”의 경우 서울대학교, 국립한경대학교 2곳이 있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학과·전공”을 보유한 대학 또는 대학원은 없음.

【 국내 국제농업협력 특화 대학원 현황 】

구 분	과정명	운영 특징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학과 국제농업개발협력 전공	- 농업개발 중심 석·박사 과정 - 국제농업개발 연구
국립한경대	국제개발협력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협력전공 스마트농업공학전공	- 농업 기술+개발 협력 융합 - 스마트농업 분야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제출 (2025. 6. 19)

현재 국내 대학 중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학과·전공”을 보유한 대학이 없고, 대학원의 경우에도 2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보다 양질의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28조는 전반적으로 ‘해외농업(산림) 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28조에 제4항으로 신설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제28조의 내용과 체계가 부합하지 않음.

더욱이, 현행법에서는 ‘해외농업(산림) 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제5조의2)과 ‘국제농업(산림) 협력사업’(법 제5조의3, 제5조의4)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의 구성체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농식품해외자원개발·국제농업협력사업 비교 】

구 분	농식품해외자원개발사업	국제농업협력사업
근거	• 법 제5조	• 법 제5조의3
관련 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개념	•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및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 준비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농업 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 추진
사업 추진 방식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정보제공, 조사·컨설팅 등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시 필요한 사업자금 융자지원	• 개도국의 시설구축 기자재 지원, 정보제공 등 지원 • 국제기구(WFP, IFAD 등)와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식량원조 등 협력사업 추진
예산 ('25년)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2,835백만원)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 (6,000백만원)	• 기획협력사업 (41,544백만원) • 다자성양자사업 (202,382백만원)

【 해외산림자원개발·국제산림협력사업 비교표 】

구 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국제산림협력사업
근거	• 법 제5조의2	• 법 제5조의4
관련 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사업 추진 방식	•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청년인재육성 (한국임업진흥원) - 해외산림자원개발 관련 조사·컨설팅, 기술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등 - 해외 직무체험을 통한 인재양성과 기업맞춤형 인력지원 •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 해외조림, 육림, 임산물가공시설 등	• 개발도상국과 양자 간 산림협력 • 국제기구 지원을 통한 다자 간 산림협력
예산	• 국제산림협력 (610백만원) • 산림사업종합자금(4,700백만원)	•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ODA) - 양자ODA(7,742백만원, 11개) - 다자ODA(18,755백만원, 13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및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해외자원담당관 제출(2025. 6. 17) 일부수정

둘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기본법인 「고등교육법」 제19조는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학교 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등교육법⁴⁾에서 각 학교가 대통령령 및 조례, 정관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는 학교조직(학부, 학과, 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를 개별법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 상충의 우려가 있는바, 개정안의 “설치”를 지원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운영”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동법 제28조제1항5)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해외농

4)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위원회(이하 “대학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8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각각 수립·추진할 수 있다

업 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산림청 소관인 해외산림 자원개발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해외산림자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에 관한 사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농식품부장관의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 법적 근거 신설(안 제31조의3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농업협력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농업협력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지침(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②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시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현행	개정안
	다. 다만, 제1항의 평가지침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때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시기·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기 규정되어 있고, 국가 전체적인 전략 하에 추진함이 바람직하므로 별도의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2)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평가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근거하여 ODA를 추진하는 모든 부처(시행기관)가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평가 결과 공개 및 국회 보고를 기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에서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말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시행기관과 범위가 상이하여 법률 간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외교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평가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근거하여 ODA를 추진하는 모든 부처(시행기관)가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평가 결과 공개 및 국회 보고를 실시하고 있는바, 농림축산식품부만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리하는 것은 ODA 평가 및 환류체계의 비효율과 혼선을 초래할 것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함.

다. 검토의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시행기관⁶⁾이 실시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고 있음.

각 부처 등 시행기관이 실시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하여 상기 위원회가 평가하는 것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어느 한 부처의 소관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범부처적인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

- ☐ (목적) 국제개발협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평가전문위원회 설치
- ☐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 (구성) 위원장 1인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구 분	구 성
위원장(1)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
당연직(5)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간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한국수출입은행 경험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위촉직(10)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실무위원장이 위촉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 주요 기능

- 국제개발협력평가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평가 수행
-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결과 심의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및 점검
- 기타 위원회가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제출(2025. 6. 17)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평가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스스로 소관 업무를 평가하게 되어 현행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통한 환류 및 사업 개선에도 목적이 있는바,

농식품부 차원에서 소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부 전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정책 방향 및 환류 조치와도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1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 종합계획('23~'27)

- **(목표)** 국정과제·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곡물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국내 반입역량 강화' 추진
- **(전략)** 전략품목의 안정적 확보, 진출 유형별 맞춤형 기업 지원, 국내 반입 활성화, 장기·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주요 곡물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와 비상시 국내 반입 역량 강화

* 대규모 영농 기반(1만ha 이상) 및 가공·유통시설 등 : ('21) 7개 → ('27년 목표) 11

- **(전략품목)** 해외 수입의존도, 국내외 시장 및 공급망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전략품목* 선정 및 우선 지원

* ①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②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필수 식품 원료

- **(공급망)** 외부 영향(특정국의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 등) 최소화 및 국내 반입 역량 강화를 위해 진출지역 다변화*, 공급 기반 다양화** 추진

* (기존) 연해주, 동남아 위주 진출 → (확대) 미주, CIS, 오세아니아

** (기존) 생산·경작 위주(콩) → (확대) 가공·유통 등 밸류체인 진출(식용유, 대두박 등)

- **(지원)**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국내 수요기업과 해외농업자원개발 간 연계 강화(국내 수요기업과 협의체 구축, 콩 TRQ 물량 배정 확대 등)

-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 외 자금지원 방안 발굴 검토

- **(제도개선)**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원활한 국내 반입을 위한 제도 마련(손실보상 관련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완비) 및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참고 2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세부내용

비전

국내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

목표

- 주요 곡물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와 국내반입 역량 강화
- ◆ 전략 품목* 해외 확보량 : ('21) 208만톤 → ('27년) 600만톤
*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 ◆ 해외농업자원 개발면적 : ('21) 29만ha → ('27년) 50만ha
 - ◆ 대규모 공급기반* 확보 : ('21) 7개소 → ('27년) 11개소
* 1만ha 이상 영농기반('21년 5개소) 및 대형 유통·가공 시설('21년 2개소)

추진 방향

- ◇ 국내 농식품 산업에 기여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
- ◇ 다양한 외부 리스크에 대응 역량 제고
- ◇ 해외농업자원개발 분야 장기적 발전 대비

전략 및 중점 과제

전략 1 전략 품목의 안정적 확보

- ① 전략 품목 선정 및 우선 지원
- ② 진출 지역 및 공급 기반 다변화

전략 2 맞춤형 기업 지원

- ① 진출 규모별 우선분야 중점 지원
* 대규모 : 국내 반입 확대 / 중소규모 : 정착 및 경영안정
- ② 진출 형태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영농형 : 영농기술 선진화 / 유통·가공형 : 현지조사, 컨설팅, 국내수요 연계

전략 3 국내 반입 활성화

- ① 반입 활성화를 위한 손실보상 제도 마련 및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 ② 국내 수요기업과 해외농업기업 간 연계 강화
- ③ 비상시 수급 불안 대비 비축·유지 방안 검토

전략 4 장기·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① 안정적 사업지원 체계 마련(자금 및 조직)
- ② 농업 ODA 사업과의 연계 협력 활성화
- ③ 청년 인력 해외농업개발 참여 활성화
- ④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 ⑤ 해외농업 미래 발전 분야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참고 3

'24년 해외농업자원개발 국가별 세부현황

□ '24년 총 35개국 225개 기업 중 21개국 57개 기업 371천ha개발, 2,600천톤 생산·유통 및 378천톤 반입 ('25.2.17 기준)

국가	기업	개발면적(ha)			생산·유통량(톤)			반입량(톤)		
		'23년	'24년.6월	'24년12월	'23년	'24년.6월	'24년12월	'23년	'24년.6월	'24년12월
국가별총계	235	188,642	109,085	371,152	1,678,277	909,999	2,599,848	98,462	22,657	377,837
러시아	17	20,389	17,978	19,981	60,289	5,140	74,751	26,938	20,957	24,080
중국	32	404	275	275	1,944	490	1,685	1,264	-	-
몽골	12	650	-	-	70	-	-	-	-	-
캄보디아	46	4,902	6,914	1,699	28,561	9,701	16,520	207	525	646
인도네시아	22	49,104	42,866	52,953	1,099,641	658,951	1,243,104	-	-	-
필리핀	14	-	-	-	-	-	-	-	-	-
라오스	15	384	327	325	8,981	5,024	5,052	-	-	-
베트남	16	2,009	2,011	2,261	92,301	92,333	84,331	771	406	2,275
미얀마	6	76,116	33,248	49,773	277,831	121,236	191,905	139	79	101
인도	2	21,749	4,646	8,606	21,749	15,736	31,509	-	-	-
파키스탄	1	-	3	-	-	1	1	-	-	-
스리랑카	1	-	-	-	-	-	-	-	-	-
카자흐스탄	3	-	-	-	-	-	-	-	-	-
키르기스스탄	10	15	190	255	564	540	1,427	-	50	-
우즈베키스탄	5	4,696	182	1,487	16,735	512	3,404	-	-	-
타지키스탄	1	-	-	-	-	-	-	-	-	-
아제르바이잔	1	-	-	-	-	-	-	-	-	-
우크라이나	3	-	-	-	-	-	-	-	-	-
터키	1	9	-	8	21	-	7	10	-	3
루마니아	1	13	13	13	12	12	12	-	-	-
네덜란드	1	-	-	-	-	-	-	-	-	-
브라질	4	1,149	1	1,148	303	1	105	48	-	8
우루과이	1	-	-	-	-	-	-	-	-	-
칠레	1	27	8	8	80	30	30	-	-	-
페루	1	272	423	365	712	292	592	640	640	479
미국	5	6,291	-	231,663	68,445	-	944,254	68,445	-	350,245
뉴질랜드	1	-	-	-	-	-	-	-	-	-
호주	3	-	-	-	-	-	-	-	-	-
마다가스카르	1	-	-	-	-	-	-	-	-	-
우간다	2	463	-	-	38	-	-	-	-	-
콩고민주공화국	2	-	-	-	-	-	-	-	-	-
모잠비크	1	-	-	-	-	-	-	-	-	-
태국	1	-	-	-	-	-	-	-	-	-
볼리비아	1	-	-	20	-	-	84	-	-	-
캐나다	1	-	-	312	-	-	1,075	-	-	-

* 225개 기업(총 신고기업 235개 중 중복 진출 10개 제외)

** '24년 신규 진출국가: 캄보디아(1), 베트남(1), 캐나다(1)

참고 4

해외조림 현황('93~'24)

국가	계(ha)	'93~'17	'18	'19	'20	'21	'22	'23	'24
14개국	309,367	258,332	17,075	5,620	11,795	10,157	4,094	1,652	642
호 주	16,267	16,267	-	-	-	-	-	-	-
뉴질랜드	12,915	12,398	-	517	-	-	-	-	-
피 지	510	230	280	-	-	-	-	-	-
솔로몬	25,768	19,873	1,362	1,136	995	830	668	522	382
베트남	25,181	23,031	237	698	930	100	185	-	-
인도네시아	189,469	149,930	14,926	2,179	9,070	9,053	3,141	1,010	160
필리핀	3,340	3,300	10	10	-	-	-	20	-
중 국	7,670	7,670	-	-	-	-	-	-	-
라오스	530	480	50	-	-	-	-	-	-
캄보디아	13,628	13,268	60	-	-	-	100	100	100
파라과이	5,635	3,431	150	1,080	800	174	-	-	-
우루과이	5,890	5,890	-	-	-	-	-	-	-
칠 레	200	200	-	-	-	-	-	-	-
미얀마	2,364	2,364							

문 의 처

02)6788-5426
